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의안 번호	41
----------	----

제출년월일 : 200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21C 정보화 시대에 대응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이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낭비는 물론 전국 공통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협의·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 됨
- 이를 위해 16개 시·도가 구성원이 되는 자치정보화조합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가 본 조합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의 의회 의결이 필요

## 2. 주요골자

- 목적은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
-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구성은 16개시·도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2조, 제3조, 제4조)
- 조합의 사무(제5조)
  - 전자정부구현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

-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 조정
  -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 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
  - 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훈련 등
- 조합회의 구성, 임원, 의결, 감사, 운영, 결정(제6조~제11조)
- 조합회의 위원은 시·도의 정보화 담당 실·국장 또는 CIO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선출, 임기 2년
  - 조합회의 의결사항은 조합규약의 개정, 조합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결산의 승인 등
  - 조합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실시하며 5일 범위내에서 한다
  - 조합회의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개최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 조합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단 조합장 선임과 분담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집행기관(제12조, 제13조)
- 조합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걸쳐 연임 가능
  - 사무기구는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두며,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

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 재무 및 회계(제14조, 제15조, 제16조)

- 조합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
- 예산편성은 조합회의에서 심의·확정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집행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조합회의의 승인, 자치단체에 통보

○ 보칙(제17조, 제18조)

-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 준용

○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규약 승인후 지역정보화협의회 규약폐지와 협의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조합이 승계
-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정관에 의하여 해산한 후 조합은 이를 승계

**3. 의안전문 : 불 입**

**4. 관계법령발췌 : 불 입**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3.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
4.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5.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훈련
8.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 제 2 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의 위원은 구성 시·도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 소속기관의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의장 또는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기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예산·결산의 승인
5.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결정
6.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결산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의 선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2조 제2항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
  - 2. 제14조 제2항에 의한 분담금의 결정

### 제 3 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다.

- ② 조합장은 행정 또는 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사업본부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고유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사무기구 직원의 정수 및 구성과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장 재무 및 회계

제14조(재원) ① 조합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 ②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기타 수입금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서비스, 역무의 대가 등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및 역무 등의 대가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외부감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17조(사무위탁) ①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규정 중 일부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정보화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 규약의 폐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 1조의 시행일 당시 협의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규약에 의한 조합이 승계한다.

③ 부칙 제1조의 시행일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협의회 명의는 조합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 협의회가 행한 행위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조합이 행하거나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정관에 의하여 해산한 후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조합에 인계하는 경우 조합은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31>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50조(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94·3·16>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2조(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3조(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154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제50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